

-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의 안 번 호	785
------------	-----

2019년 8월 28일
교 통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7월 18일, 송도호 의원 외 9명 발의

나. 회부일자 : 2019년 7월 25일

다. 상정일자

- 제289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교통위원회(2019년 8월 28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송도호 의원)

가. 제안이유

- 교통문화교육원 조례상 정해진 공휴일 외에 시설 정비 등을 위해 월 2회 추가 휴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도록 조례에 명문화하여 시설운영의 안전성을 높이고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임.

나. 주요골자

- 시설 정비 및 보수를 위해 월 2회 일요일에 휴관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 신설 (안 제5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지방자치법」

나. 예산 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19. 7. 30 ~ 2019. 8. 6

○ 의견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 서울시장(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 원안동의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1월1일)·제4호(설 연휴)·제9호(추석 연휴) 및 제10의2호(공직선거일)에서 정하는 공휴일만 제외 하고 개관하여 운영함에 따라
- 시설 정비 및 유지보수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월2회 추가로 휴관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해당 조항을 명문화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수용함.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동수)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현재 교통문화교육원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공휴일 이외에 시설정비 및 보수를 위해 월 2회 휴관하는 현실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운영의 안정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교통문화교육원은 현행 조례 제5조제2항1) 등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제4호·제9호 및 제10의2호에서 정하는 공휴일에 한해 휴관하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 일요일의 경우 “원칙적으로 개관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격주로 시설을 휴관하고 있는 실정임
- 서울시 교통위원회는 지난 287회 정례회 기간 중 조례상 휴무일이 실제 교통문화교육원 운영현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 조례위반 소지가

1) 제5조(운영의 원칙) ① (생략)

② 교육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제4호 및 제9호에서 정하는 공휴일 및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개관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외공관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입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있음을 지적한 바,

동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시설물 유지관리를 통한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설 정비 및 보수를 위해 월 2회 일요일을 지정하여 휴관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운영의 원칙)</p> <p>① (생 략)</p> <p>② 교육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제4호·제9호 및 제10의2호에서 정하는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개관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p> <p><u><신 설></u></p>	<p>제5조(운영의 원칙)</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p> <p><u>다만, 시설 정비 및 보수를 위해 월 2회 일요일을 지정하여 휴관할 수 있다.</u></p>